

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특례보증 시행

-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재정부의 “특례보증 운용지침”을 토대로 개성공단 특례보증 관련 세부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시행 중
- 보증대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으로서 보증한도는 보증기업의 기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시설자금은 100억원 이내, 운전자금은 70억 이내
 - 기술보증기금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
- 특례보증제도 시행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의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
 - 남북협력기금의 ‘손실보조제도’에 가입한 기업은 보증료를 0.2% 차감 적용

첨부 : 1. 개성공단 특례보증 주요내용
2. 기타 보증신청시 유의사항

개성공단 특례보증 주요내용

□ 보증대상기업

-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 설립한 기업
- * 시행초기에는 개성공단 현지기업은 보증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

□ 보증지원한도

1)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한도

- 다음의 보증한도 중 적은 금액 이내로 보증지원
- ① 국내기업의 기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최고 100억원 이내
- ② 개성공단 현지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70% 이내
- * 현지시설투자 소요자금 : 개성공단에 조성되는 시설(토지, 건물, 기계 등 생산설비)에 투자되는 자금의 합계
- ⇒ 국내기업이 보유한 설비를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설비투자는 시설투자 소요자금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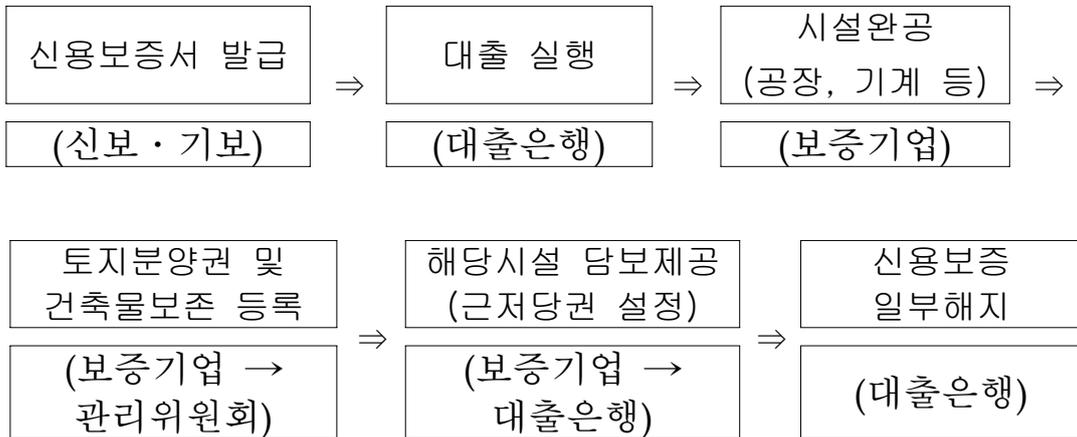
2)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

- 개성공단 현지기업이 입주하여 정상 가동시부터 필요한 운영자금에 대해 보증지원
- * 운전자금 보증지원은 현지기업의 매출실적(예상매출액 포함)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금범위내에서 결정
- ⇒ 현지기업 연간 매출액(또는 예상매출액)의 1/4 범위내 등

□ 개성공단 현지자산 담보 활용

-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가 완공된 후 해당시설을 대출은행에 담보제공(근저당권 설정) 및 신용보증 일부 해지 처리
 - 현지자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은행 위주로 보증서 발급 예정
- ⇒ 시설완공 후 신용보증금액의 일부를 해지할 경우 보증료 부담 감소 효과

《현지자산 담보 활용 절차》



□ “손실보조제도” 가입업체에 대한 우대

- 보증료는 보증신청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(보증금액의 연율 0.5%~3.0%)
 - 「남북협력기금」의 손실보조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보증료를 0.2% 수준 차감하여 적용
- ⇒ 손실보조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신용보증서에 의해 대출받는 시점에 손실보조제도에 따른 지급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채권 양도(또는 질권설정)절차 필요

□ 개성공단 특례보증 업무절차

단계별	주요내용	비 고
◦ 보증상담	□□ 개성공단 전담팀(영업점) 창구 상담, 전화상담 등	개성공단 전담팀(또는 영업점)
◦ 서류제출	□□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	개성공단 전담팀(또는 영업점)
◦ 신용조사	□□ 담당자가 신용조사 (현장조사 및 측면조사)	개성공단 전담팀
◦ 보증심사	□□ 종합신용등급 산출 □□ 보증한도 사정 □□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	개성공단 전담팀
◦ 보증승인	□□ 본부승인	심사위원회
◦ 보증서발급	□□ 신용보증약정 체결 □□ 보증료 수납	개성공단 전담팀

※ 신보의 경우 개성공단 특례보증은 별도 전담팀에서 담당할 예정이나, 보증상담 및 서류제출,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은 신청기업의 사업장과 가까운 영업점에서도 대행 가능

⇒ 전국 영업점 확인은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(www.Kodit.co.kr) 참조

⇒ 개성공단 특례보증 전담팀 연락처는 전담팀 구성 후 홈페이지 등에 안내 예정

□ 신용보증 상담

- 대표자 또는 기업관련인과 상담 등을 통하여 보증신청기업의 신용상태와 보증신청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검토

※ 신용보증 상담시 준비서류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
- 최근년도 재무제표 (매출실적 확인자료)
- 기타 국내 및 현지기업 사업현황 설명자료 (사업계획서 등)

□ 서류접수

-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위해 기초자료제출

< 제출서류(예시) >

서 류 명	비 고
○ 기업개요표	서면 또는 인터넷 제출
○ 주민등록등·초본	대표자(동업자, 공동대표자, 무한책임사원, 실제 경영자)
○ 금융거래확인서	주채권기관, 당좌거래은행, 대출예정은행 등
○ 재무제표(부속명세서포함)	최근 3개년분(기업제시 또는 세무사 확인)
○ 납세증명서(국세)	
○ 납세사실증명	
○ 부동산등기부등본	사업장 및 거주주택(임대차계약서 사본)
○ 법인등기부등본	법인에 한함
○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성공단 현지기업과 관련한 자료(협력사업승인서, 사업계획서, 정관 등) · 공장신축시 건축허가서, 건축도급계약서 등

- 주) 1.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 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
 2. 부동산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·초본 등은 신보에서 직접 발급 가능

□ 신용조사

- 제출서류를 통한 기초조사 및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신용상태, 영업현황 및 개성공단 투자의 적정성 등을 파악

□ 보증심사

-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내부기준에 따라 사업성, 보증부대출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증지원 가부 및 보증금액 결정

□ 보증결정 및 통지

- 보증이 결정되면 보증 신청업체에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제반사항 안내

□ 신용보증 약정체결,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

-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본인이 신용보증약정서에 직접 서명·날인 및 보증료 납부 후 신용보증서 발급
- 보증료 납부
 - 보증취급에 따른 보증료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(보증금액의 연율 0.5%~3.0%)
 - 보증료 납부는 보증기간(대출기간) 동안 1년 단위로 선납

기타 보증신청시 유의사항

□ 보증상담 및 신청 前 필요사항

- 남북협력사업자 승인, 현지기업 창설, 건축허가 취득 등 관계법률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 선행과
- 공장 건축, 기계설비 투자 내역 등 소요자금 계획 확정 후 보증상담 및 신청하는 것이 보증진행절차 단축에 도움

□ 시설자금은 해당 공사진행율(기성고)에 따라 대출 취급

- 공장신축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은 해당 시설투자의 진행정도에 따라 분할하여 대출 실행
- 대출금은 신청기업이 아닌 공장건축자금의 경우 건축업체, 기계설비의 경우 기계제작업체에 직접 송금하는 형태로 집행

□ 대출금 및 국세 연체관리 등 신용도 관리 필요

- 보증신청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기관의 연체, 세금 체납, 부동산(사업장, 대표자 거주주택 등)에 권리침해(경매, 가압류, 압류 등) 사실이 있는 경우 보증취급 불가